

2026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 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정 읍 시 장

I 개 요

2026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두 가지 자격요건 중 해당되는 사업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403호) 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 (사업기간) 2026. 2 ~ 11월 / 상·하반기 시행
- (신청기간) 4. 1.(수) ~ 4. 30.(목) ※ 매년 신규 신청
- (지원대상)

전 북 도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25. 12월 ~ `26. 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한 자 * 2019. 1. 1.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및 18~39세 미혼 청년
정 읍 시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한 자 * 2016. 4. 1. ~ 2026. 3. 31. 기간 중 혼인 신고한 부부 및 18~45세 미혼 청년

- (지원내용)

전 북 도	실제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 자격조건 유지 시 최장 2년간 지원
정 읍 시	대출잔액 연 최대 300만원(최대 연 2%) - 자격조건 유지 시 최장 10년간 지원

○ (소득기준)

전 북 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25. 8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단위:천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564	4,199	5,359	6,495	7,557	8,556
	중위소득 180%	4,615	7,558	9,646	11,691	13,602	15,401
정 읍 시	(청 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전 북 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m ²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정 읍 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제외대상)

전 북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신용·일반대출 등을 받은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년도 정부 및 지자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사업 수혜자
정 읍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도 사업과 상동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부부합산 재산세 50만원 이상 납부자

○ (지급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II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4. 1.(수) ~ 4. 30.(목), 09:00 ~ 18:00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청년 본인신청

❖ 본인신청 예외

- 피성년후견인일 경우(법원 판결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대리 수령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직접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25. 3. 9.)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류	비 고
① 신청서, 서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설문지 각 1부	별지 서식
② 전세 및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등기설정 서류 <주택매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④ 대출이자 납부 증빙 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은행 발행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세자금 대출의 한해 제출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⑥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임신확인서
⑦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有>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無>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전국단위) ※ 최근 1년 기준, 전국 기준 발급,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⑧ 신청인 신분증(사본)	
⑨ 신청인 통장사본	

III 선정방법

- (선정방법) 예산액 초과 시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청년 및 신혼부부 신청 비율대로 선정(예. 신청비율 3:7 → 선정비율 3:7)
 - 신청물량 초과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청 년 》

평가항목	소득(少)	나이(多)	정읍시 연속 거주기간(長)	비고
우선순위	1	2	3	

《 신혼부부 》

평가항목	자녀수(多)	소득(少)	정읍시 연속 거주기간(長)	비고
우선순위	1	2	3	

-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IV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지급금액)
 - ┌ 전북도 : 실납부 전세대출 이자액 3%(최대 150만원 한도) 지원
 - └ 정읍시 : 주택자금 대출잔액 2%(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전 북 도	예시) 대출금액 2,000만원 × 0.03 = 60만원 대출금액 5,000만원 × 0.03 = 150만원(한도) 대출금액 7,500만원 × 0.03 = 150만원(한도) 대출금액 1억원 × 0.03 = 150만원(한도)
정 읍 시	예시) 대출잔액 2,000만원 × 0.02 = 40만원 대출잔액 7,500만원 × 0.02 = 150만원 대출잔액 1억원 × 0.02 = 200만원 대출잔액 1억5천만원 × 0.02 = 300만원(한도)

※ 전북도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지급액이 최대 지원금액(1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하반기 추가 신청 필요

- (지급방법) 신청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V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제반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8)으로 문의 바랍니다.

정읍시 청년정책 알림서비스 신청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정읍시 청년정책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 동의서

『정읍시 청년정책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수집된 정보는 정읍시 청년정책 안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정읍시 청년정책 알림서비스 제공	청년연령(18~45세) 해당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읍시 청년정책 알림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자(수탁기관)	업무내용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정읍시 청년정책 알림서비스 제공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읍시 귀중

사업 관련 Q/A

☞ 연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소득은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1년),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상 소득 적용
 - * 신청일 기준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 연소득의 기준은 청년 6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1억원 이하로써 소득금액증명원 상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총액 및 수입금액,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의해 판정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본인부담금에 의해 소득을 판정합니다.
-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모든 소득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 되는 소득을 활용하며, (근로자: 근로소득, 사업자 : 종합소득신고금액) 4대보험 미가입으로 단순 이체성격으로 받는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등으로 단순 소득세율 3.3% 적용되어 나오는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나오는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은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되는 경우 역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증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시 제출 제외)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또는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주택 소유자 중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지원기간은 최장 몇 년까지 인가요?

- 전북도 사업의 경우 자격 조건 유지 시 최장 2년, 정읍시 사업의 경우 자격 조건 유지 시 최장 10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Q/A

☞ 혼인 기간이 자격 기준일 이전에 혼인한 경우도 지원되나요?

- 전북도 사업의 경우 혼인일이 **2019. 1. 1. 이후인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 정읍시 사업의 경우 혼인일이 자격기준일 **2016. 4. 1. ~ 2026. 3. 31.** 안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2026. 3. 3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6년 하반기(10월 예정)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확인 서류 중 (대출용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용도로 만들어진 대출과목을 말하며,
- 금융거래확인서의 종별란에 「주택」, 「임차」, 「전세」라고 나온 과목을 말합니다.
- 다만, 신용대출 용도로 대출받아 주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재혼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재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타 시·군·구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올해 1차분에 지원대상자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해연도 2차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연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전북도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지원금액 미달 시, 하반기의 추가 신청을 통해 잔여 지원금 수령 가능합니다.

☞ 재신청시 꼭 직접방문 해야 하나요?

- 재신청의 경우 거주 및 대출잔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를 준비하셔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업 관련 Q/A

☞ 신청시 지원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까?

-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 등의 가족 관계의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상이 안됨(다만,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인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만 (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징구하여 확인)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가능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차하는 경우)
-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
- 무허가건물 등

(단위 : 원)

■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26년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9인	20,581,000	838,330	804,150	1,076,939
10인	22,307,000	838,330	804,150	1,076,939